

## 韓國側 質問事項

### I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 (질문1)

거주자의 정의에서 주소란 개인의 생활본거지를 말한다고 했는데 생활본거지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무엇입니까?

#### (회답 1)

어떤 이의 체재지가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있는 경우에 생활본거지의 판단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생활본거지가 어딘지 판단하기 위하여는 아래와 같이 객 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 ①거주
- ②직업
- ③자산소재
- ④친족거주상황
- ⑤국적

#### (질문 2)

국내원천소득 유형 중에서 9호[광고선전용 상금]이 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과세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 (회답 2)

「9 호 광고선전용 상금」에 규정한 「사업상 광고선전을 위한 상으로 지급하는 금품 기타 경제적 이익」(所屬 條 320 條 第 7 項)이란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상품 또는 사업내용 등을 일반에게 알리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상·금품 등을 말합니다.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상금 등의 금액에서 50 만 엔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20%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상금 등을 지급한 자가 부담하는 경우의 상금 등의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이 포함됩니다.

또한 상금 등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평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물품을 처 분시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주식, 귀금속, 부동산 등은 받은 날의 가 액, 상품권이나 증정권 등은 권면액으로 평가합니다. 단 정기금의 권리나 신탁수익권, 보험계약에 관한 권리를 제외한 기타의 것은 그 물품의 통상판매가액의 60% 상당액으로 평가합니다.

(질문 3)

국내원천소득 유형 중에서 [1호 2 조합계약의 분배금]과 [12호 익명조합 등의 분배금]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조세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회답 3)

「1 호의 2 조합계약의 분배금」소득에 대한 비거주자에의 과세는 원칙적으로 20%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단 외국조합원에 대한 과세는 일본에 항구적 시설을 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입니다.

또한 이 규정의 대상이 되는 조합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所 令 제 281 조의 2)

- ①투자사업 유한책임 조합계약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1 항에 규정한 투자사업 유한책임 조합계약(LPS)
- ②유한책임사업 조합계약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1 항에 규정한 유한책임사업 조합 계약(일본판 LLP)
- ③민법 제 667 조 제 1 항에 규정한 조합계약(민법조합(임의조합))
- ④외국에서 ①부터 ③에 계기된 계약과 유사한 계약

또한 ①부터 ③의 조합은 모두가 일본의 세무상 구성원과세의 취급대상이 된다.

「12 호 익명조합 등(상법 제 535 조 익명조합계약)의 분배금」소득에 대한 비거주자의 과세에 대하여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다.

단 익명조합원이 당해 익명조합계약의 영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중요한 업무집행결정을 하고 있는 등 조합사업을 영업자와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익명조합원이 당해 영업자로부터 받는 이익 분배금은 당해 영업자의 영업내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 각종 소득으로 취급된다.

(질문 4)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방법에서 과세소득의 범위나 과세방법이 비거주자가 항구적 시설이 있는지 또는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항구적 시설은 어떤 개념인가요?

(회답 4)

비거주자 등이 일본 국내에 「항구적시설(PE: Permanent Establishment)」을 두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과세관계가 달라지며 임시로 비거주자 등이 일본 국내에 PE를 두지 아니하면 일본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 되지 않는다.

「PE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PE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 164 조에서는

- ①지점, 출장소, 사업소, 사무소, 공장, 창고업자의 창고, 광산·채석장 등 천연자원을 채굴하는 장소
- ②건설, 설치, 조립 등의 건설작업 등을 위한 용역제공으로 1년을 초과하는것
- ③비거주자를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자로 상시 그 권한을 행사하는 자와 재고상품을 보유하고 그 입출고 관리를 대리하여 행하는자 혹은 주문을 받는 대리인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1호의 PE는 「지점 등」, 2호의 PE는 「건설 등」, 3호의 PE는 「대리인 등」으로 구분 됩니다.

게다가 일본국내에 PE가 있는지의 여부는 그 시설에 대하여 형식적이 아닌 기능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예로서 단순히 제품의 자장고인 경우에는 항구적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 세무통신 2009년 9월 7일 3081호)

#### (질문5)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 (회답 5)

일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없습니다만 이에 대신하여 거주용 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공제규정(조치법 제 35조)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개인이 그 주거용에 사용하고 있는 주택 등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연도의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이 규정을 적용 받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절차를 요건으로 하여 장기양도소득금액 또는 단기양도소득금액 중 3,000만 엔(양도차익이 3,000만 엔 미만의 경우 양도차익이 한도)을 공제합니다.

특례대상이 되는 주택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주거용에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한 때
- ②주거용에 부수된 토지 혹은 그 토지상에 존재하는 권리를 양도한 때
- ③다음의 주택을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게 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양도한 때

- (가) 재해로 멸실한 당해 주택에 부수된 토지 혹은 그 토지상 존재하는 권리
  - (나) 주택으로서 개인의 주거용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
  - (다) 개인의 주거용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수토지 혹은 당해 토지상 존재하는 권리
- 그리고 이 특례는 자기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자기의 친족으로서 자기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등이 양도상대방이 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II 세리사법인에 대하여

### (질문 1)

일본 세무법인의 경우, 개인 세무사 사무소와 다른 수익창출모델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수익창출모델을 구분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회답 1)

일본에서 세리사법인의 업무범위는 세리사법 등에 규정된 세리사 업무, 회계업무 및 보좌인업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세리사의 업무범위와 동일하며 기본적으로 개인세리사 사무소와 다른 수익창출 모델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세리사법인의 경우 개인세리사 사무소와 비교해보면 비교적 많은 세리사를 고용하기가 쉬우므로 각 방면에 정통한 세리사를 모아서 어떤 분야 예를 들면 자산세나 국제세무, 공익회계 등 특화분야의 업무를 쉽게 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질문 2).

한국의 경우 각종 자격증을 가진 전문자격사들의 통합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이 없으며 현행법으로는 설립이 불가능합니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회답 2)

통합법인에 대하여는 일본도 한국과 같은 양상이며 구체적인 법안이 없고 설립은 불가능합니다.

(질문 3)

한국에서는 세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임원이 3명 이상이고, 법인 내 세무사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세무법인을 설립할 때 법적으로 정해진 인원수가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이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세무사의 경력에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3)

일본에서 세리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세리사 자격을 가진 사원세리사가 2인 이상 필요합니다. 사원세리사는 세리사법인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한 경력 등의 조건은 없습니다.

(질문 4)

일본의 경우 세무법인이 수입하는 국제적인 기업이 많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 대해 조세 분쟁과 같은 국제적인 문제들이 자주 발생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대처방안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를 어떻게 양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답 4)

전문가의 양성방법에 대하여 세리사법인마다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리사는 세무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연찬이 원칙입니다만 통상적으로 세리사회나 각종 단체 등이 주최하는 연수 또는 세리사법인 내에서 업무에 대응할 수 있는 연수 등을 통하여 양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긴키세리사회에서는 「업무상담실」을 마련하여 회원에게 일반적인 상담에 응함과 동시에 복잡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세무·법률심리실」에서 상담토록 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 日本側 質問事項

### I 비거주자에 대하여

#### (질문 1)

예를 들어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등은 과세체계가 개인단위의 과세가 아니고 그 근본은 「家」 제도를 기초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개인단위 과세인 제 외국과의 정합성에 비추어볼 때 어떻게 생각되니까?

#### (답변 1)

한국의 소득세제도는 기본적으로 개인단위주의(individual unit system)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토지, 건물,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개인단위로 과세합니다. 그러나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보유 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비과세 또는 중과세(정부 주택정책의 영향 등)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때 보유주택의 수를 세대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가족단위주의(또는 소비단위주의:consumption unit system)가 적용됩니다. 한편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에 보다 적합한 점 때문에 현재 상당수의 나라에서 소비단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1 주택에 대한 비과세 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데 있으며, 또한 주택은 인별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단위로 거주하므로 비과세 단위도 주택에 거주하는 단위별로 비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가족간 소득의 인위적 분산 및 가장행위로 인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거주자에 한해 적용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가 소유하는 국내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국에서도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특례가 있으며, 이를 비거주자에게도 적용하는지 여부는 각국의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국별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요약]

구 분	나 라
3년 보유 비과세	.우리나라(9억원 이하의 주택)
거주기간분에 대해 비과세	.영국, 아일랜드
전 보유기간 거주 비과세	.프랑스, 캐나다, 호주
2년 거주 비과세	.독일(양도년도 거주는 거주기간에서 제외)
소득공제	.미국(직전 5년 중 2년 이상 거주시 25만달러, 부부합산신고시 50만달러) .일본(3천만 엔)
과세이연	.스웨덴(양도 직전 5년 중 3년 거주)
과세	.스위스

## II 세무법인에 대하여

### (질문 1)

일본에서는 세리사법인의 경우 업무범위는 세리사 업무, 회계업무 및 보좌인 업무에 한정되어 있으며 보험대리점 업무 등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세무법인의 경우에도 일본의 세리사법인과 같이 그 업무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까?

### (답변 1)

네 그렇습니다. 한국도 세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세무사법」에 의해 한정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확장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 세무법인의 업무 영역은 개인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런 업무로는 기본적으로 일본 세리사와 유사하며 전반적인 세무에 관한 일들을 대행, 자문, 대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 세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확장됩니다. 그 예로써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56 조에 의해 세무법인이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33 조에 의해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공단의 인가를 받아 사회보장보험 사무업무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Ⅲ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하여

#### (질문 1)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본래의 의미를 생각하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그 대상을 선정함은 납세의무에 있어서 납세자간 차이를 두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귀 회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답변 1)

한국의 소득세법에서는 업종별로 수입금액에 따라 각종 의무와 다양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크게 복식부기의무,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 적용대상을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으며,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서는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현재는 2012 년부터 업종 구분 없이 수입금액이 10 억 이상인 경우 발행하는 것으로 개정됨), 추계 신고시 가산세 등이 적용되며, 이는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가 기장능력 또는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며, 업종그룹을 크게 세가지 부류로 구분한 것은 업종별 특성으로 인한 매출액 규모, 원가율, 판관비율, 소득율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의 적용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당초에는 연 매출액 5 억 이상인 고소득전문직 및 현금수입업종으로 제한하였다가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어 전 업종으로 확대를 하면서, 업종별로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10 배 수준으로 기준금액을 차등화했으며, 이는 정부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업종별 · 수입금액별 각종 의무 비교]

업 종	복식부기의무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
광업,도소매업 등	3 억원 이상	6 억원 이상	30 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1 억 5 천만원 이상	3 억원 이상	15 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 등	7,500 만원 이상	1 억 5 천만원 이상	7 억 5 천만원 이상



(질문 2)

위(1)의 「수입금액 기준은 납세의무에 대하여 납세자간 차이를 두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어떠하십니까?」라는 질문에도 관련 있습니다만 납세자 간 차이를 둔다고 해도 그 수입기준 (①농업·임업 및 어업 등: 30억 원, ②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 15억 원, ③부동산 임대업 등: 7억5천만 원)이 어떤 이론으로 결정된 것인지를 알려주시겠습니까?

(답변 2)

당초 정부에서는 성실신고의 대상을 고소득 전문직 및 현금수입업종으로 연 수입금액이 5 억원 이상이었으나 특정 업종으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전체 업종으로 확대를 하되, 다만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면서 수입금액을 5 억원으로 할 경우에는 지나치게 적용 대상이 넓어져서 제도 도입 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정부의 판단입니다.

일단은 업종별로 금액 기준을 차등화 하고 당초 안은 약 1 만 9000 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지만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면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대상 사업자를 약 4 만 6000 명 정도로 하여, 이에 대한 관리가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에선 성과를 보고 좀더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3)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세수는 어느 정도 증가되리라 예상되니까?

(답변 3)

예상 증대세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는 상황이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통한 내부분석결과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개인사업자의 소득과약율이 다소 낮은 편이고, 특히 전문직 및 현금수입업종의 소득탈루율이 높은 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원회)의 회의내용에 있는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정확한 추론에는 한계가 있지만 당초 안(수입금액 5 억원 이상, 약 19,000 명의 대상사업자, 세액공제 한도 1 백만원) 기준으로 약 200 억 정도의 검증에 따른 세액공제를 해주고, 추정되는 세수 증대는 1200 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을 통해 세원의 투명성 확보 및 국세청의 국세업무의 민간위탁으로 인한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